#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30

발의연월일: 2020. 8. 21.

발 의 자:김도읍·정진석·이채익

조수진・권명호・金炳旭

김용판 · 정동만 · 김태흠

정점식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대통령령에서 정기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가맹사업은 유행에 민감한 산업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상황과 가맹사업 진출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정기조사가 3년마다 시행되어 가맹업자 및 가맹점 사업자가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 현재 국내 가맹사업 시장의 포화 및 과다경쟁으로 해외진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이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.

이에 실태조사의 주기를 2년으로 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,

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1항 및 제16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"가맹사업"을 "2년마다 가맹사업"으로, "할 수 있다"를 "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정보체계의 구축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 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- 1.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
- 2.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 현지 정보 및 자료
- 3.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
- 4.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 인력 육성 · 관리
- 5. 그 밖에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및 자료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 관 및 관련 협회·단체 등(이하 "중앙행정기관등"이라 한다)에 자료 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

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-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 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체계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실태조사) ① 산업통상자원	제7조(실태조사) ①
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	
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	
위하여 <u>가맹사업</u> 에 대한 실태	<u>2년마다 가맹사업</u>
조사를 <u>할 수 있다</u> .	<u>하여야 한다</u> .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제16조의2(정보체계의 구축 등)
	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
	사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전략
	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
	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
	보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<u>있</u>
	<u>다.</u>
	1.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대한
	<u>지원</u>
	2.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
	현지 정보 및 자료
	3.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
	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
	<u>류</u>
	4.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
	<u>인력 육성·관리</u>
	5. 그 밖에 가맹사업의 해외진

출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한 정보 및 자료
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구축・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, 지방 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관련 협 회・단체 등(이하 "중앙행정기 관등"이라 한다)에 자료를 요 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 에 따라야 한다.
-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체계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